



의 안 번 호	제76호
회 의 연 월 일	2022. 6. 7. (제489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경비국)
제출연월일	2022. 5. 26.

작전계장, 대테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청원경찰 배치시설의 적정한 무기와 탄약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사유 중 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표현을 신규 사유로 정비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사유로 정비(현행 제16조제4항 제4호부터 5호까지)

2)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의 사유 삭제(현행 제16조제4항 제6호 삭제)

나. 청원경찰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시 통지 등의 절차 규정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때 청원경찰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무기 회수 등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2) 통지 및 통보 서식을 신설(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신설)

다. 무기회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점검 및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청원경찰에 대한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사유 소멸 시 무기·탄약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 되며”를 “안 되며”로, “회수하여야”를 “즉시 회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에 제5항 및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원경찰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고,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기와 탄약의 지급 제한 또는 회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해당 청원경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⑦ 청원주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기관리수칙) ① ~ ③ (생 략)	제16조(무기관리수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u>아니</u> <u>되며</u> ,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u>회</u> <u>수하여야</u> 한다.	④ ----- ----- ----- <u>안</u> <u>되며</u> , ----- <u>즉</u> <u>시 회수해야</u>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u> <u>인 사람</u>	4. <u>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u> <u>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u> <u>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u> <u>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u> <u>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u> <u>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u>
5. <u>주벽이 심한 사람</u>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u> <u>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u> <u>는 사유로 무기와 탄약을 지급</u> <u>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u> <u>되는 사람</u>
6. <u>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u> <u><신 설></u>	<u><삭 제></u> ⑤ 제4항에 따라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원경찰 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정 통 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고,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 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청원경찰 무기·탄약

[] 지급제한
[] 회수

결정 통지서

제 호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통 지 내 용	결정내용			
	무기·탄약 지급제한 (회수)사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무기·탄약 지급제한 (회수)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00 시설주·사업장 직인

청원경찰 무기·탄약

[] 지급제한
[] 회수

결정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청원주	성명	생년월일
	직책	연락처

통보 내용	배치 사업장의 명칭		배치 사업장의 소재지
	대상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결정내용		
	무기·탄약 지급제한 또는 회수 사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무기·탄약 지급제한(회수)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원주

(서명 또는 인)

〇〇경찰서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대테러과	
연 락 처	(02) 3150 - 1226